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목 차>

1.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송이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83
	과장	김종훈		이메일	2081001@mail.go.kr

2021. 07. 23.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2.규제조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6조의8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7.29 ~ 2021.09.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서민 대상으로 양성적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인가정책을 운영해 온 측면 <p>□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중앙회의 부실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으로서 지출한 출자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조합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 ○ 금융소비자로서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만큼, 중앙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 <p>* 상호금융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p> <p>➡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p> <p>□ 신협 영업구역 확대 등에 따라 상호금융의 영업형태가 저축은행과 유사해진 반면, 건전성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합간 자산확대 및 대출영업 경쟁이 심화되어 소형 조합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 <p>* 예) '90년대 후반 신협 자체 예금보호기금 고갈 사태로 인해 580여개 신협이 구조조정되었으며, 총 4조7,000억원의 재정 투입된 사례</p> <p>⇨ 이에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p>		

		시에 업권內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7.규제내용	<p>①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p> <p>○ 향후 부동산 등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지역 조합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위조합 여신이 기업대출, 부동산·건설업 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업종별 한도 규제 도입</p> <p>-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p> <p>② 단위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p> <p>○ 지역 조합의 부실이 중앙회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합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조합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도입</p> <p>-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p>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td> <td>2,225개 조합</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	2,225개 조합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	2,225개 조합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업권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 규정을 통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p>조합원: 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져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및 관련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p> <p>조합: 대출규제 도입에 따라 대출자산 축소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감소,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영전략 변경에 따른 제반비용, 및 대출탐색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p>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제1항제2호의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제12조제1항제4호</u>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제4분기 기준”100분의 60이상</p> <p style="padding-left: 20px;">바. (생략)</p> <p>제12조(건전성 비율)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u>제4호</u>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제1항제2호의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제12조제1항제5호</u>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제4분기 기준”100분의 60이상</p> <p style="padding-left: 20px;">바. (생략)</p> <p>제12조(건전성 비율) ① ----- ----- ----- ----- <u>제5호</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이상</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다.)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p><u><신 설></u></p>	<p>-----</p> <p>----.</p> <p><u>제16조의8(업종별 대출등 한도)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등“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각 목의 업종별 대출등이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30</u></p> <p><u>가. 건설업</u></p> <p><u>나. 부동산업</u></p> <p><u>2. 제1호 각목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u></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상호금융업은 상호간의 인적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 주식회사인 은행 등 금융회사와는 차별화

* ①지역중심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지역 중심 인적유대 형성
②직능중심 조합: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특정업종 종사자 중심 인적유대 형성

** 조합원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조합원을 주 영업대상(비조합원 대출한도 등)으로 하며,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결권(1인 1표) 보유

□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서민 대상으로 양성적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인가정책을 운영해 온 측면

* 신협법의 경우 신협이 사설 무진회사, 사설 계 등의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72년 8.3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신설 → "사금융의 양성화"가 주목적

□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중앙회의 부실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

○ 조합원으로서 지출한 출자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조합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

○ 금융소비자로서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만큼, 중앙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

* 상호금융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
 - 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② (유동성비율 규제)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할 필요

* 신협법(§83조의3)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
	내용	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감독규정에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
	내용	신협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	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조합의 당기순이익 축소 우려
규제대안2	신협 이외 상호금융업권에 건전성 규제 미도입으로 풍선효과 발생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리스크 악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상호금융업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건전성 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금융감독원	건전성 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	특이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상호금융업권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3. 규제목표

- 현행 신탁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각 상호금융기관들이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법률이 각기 달라 규제차이가 존재

< 상호금융조합 감독·검사 제도 현황 >

구분	감독기관			인허가	검사기관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신협	금융위				금감원 중앙회	금융위 (금감원) (중앙회)
농협 수협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건전성 감독)	- 해수부	농식품부 해수부	금감원 (신용사업) 중앙회	주무관청 (중앙회)
산림	산림청		-	산림청		
새마을 금고	행안부*				중앙회 (금감원)*	

* 행안부장관은 금고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새마을금고법 §74①)
 행안부장관은 필요시 금감원장에 금고·중앙회 검사지원요청 가능(새마을금고법 §74④)

- 이에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內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
- 상호금융업권 개별조합의 여신이 특정 차주·업종에 편중되어 경기 변동 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업권과 같은 여신규제 도입 필요

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 (§16조의8)

-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가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달리 없음

* (저축은행 업종별한도) 부동산업·건설업 각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로 제한하는 등 특정업종 등에 대해 한도 설정(저축은행업감독규정 §12②)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 19.4 → ('18말) 52.9 → ('19말) 64.2 → ('20말) 79.1(16년대비 59.7조원 증가, 308%)

- '20년말 총여신 중 비중(19.7%)*도 '16년(6.7%)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특정업종 여신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저축은행 같은 업종별여신한도 도입 필요

*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 ('18말) 15.2 → ('19말) 17.6 → ('20말) 19.7

- (개선)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업종별 여신한도 세부규정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

- 부동산업(A): 총대출의 30%
- 건설업(B): 총대출의 30%
- 부동산 합산(A+B): 총대출의 50%

※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19.6월)」을 통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의 **1/3 이내로** 지도하고 있으나

'20.3월말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도 미준수 조합이 **352개***(15.8%)에 달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신협 : 120개, 농협 : 197개, 수협 : 35개, 산림 : 없음

※ **(시행시기)** 규제 도입시 **158개 조합의 3.6조원 대출자산이 축소**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기간이 1~3년임을 감안하여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할 예정**

②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 마련(\$12조)

- **(현행)**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의 하나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운영하는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

* **(저축은행 유동성비율 규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대출채권 등)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63.7%('20.6월말)**, 유동성비율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개선(유동자산으로 상환준비금 100%인정(현행 50%), 요주의 이하 유가증권을 제외)하면 **80.0%로 상승**

- **(개선)**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동일하게 유동성비율 규제를 규정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도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 비율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기 도입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되었던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향후 평가계획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1년도 하반기) 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예정

3. 종합결론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의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이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발판 마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p>조합원: 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져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및 관련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 조합: 대출규제 도입에 따라 대출자산 축소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감소,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영전략 변경에 따른 제반비용, 및 대출탐색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p>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
활동제목	상호금융업권 조합의 경쟁력 약화
비용항목	경쟁력 약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여신규제 도입에 따라 대출시장 내 상호금융업권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나, 관련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정성)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
활동제목	경영전략 재수립
비용항목	경영전략 변경에 따른 제반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여신규제 도입에 따라 경영전략 변경에 따른 제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정성)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
활동제목	대출규제 및 자금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조합의 당기순이익 감소
비용항목	당기순이익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1.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p> <p><input type="checkbox"/> (현황) '20년말 상호금융업권 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 79.1조원으로 총여신(401.1조원)의 19.7% 수준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할 경우 158개(전체의 7.1%) 조합에서 총 3조 6,899억원 여신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p><input type="checkbox"/> (영향) 한도 준수를 위해 3조 6,899억원의 대출자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하는 당기순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p>

(참고) **영향분석 주요가정**

□ 한도를 초과한 여신규모 만큼 ①대출자산을 축소하고 ②대출 축소분과 동일한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

→ 대출 축소분 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중앙회 예치금에서는 수익 발생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 립
평균 대출이자율(A, %)	4.21	3.58	3.62	4.21
중앙회 예치이자율(B, %)	1.30	1.30	1.39	1.30
손실률(A-B 금리차, %p)	2.91	2.28	2.23	2.91

□ 조합이 대출자산을 축소하여 중앙회에 예치한다는 가정

○ 조합은 유가증권(회사채, 수익증권, CP) 매입 등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영세조합(직원이 10명미만)이 많고 전문운용인력을 갖춘 경우도 드물어 중앙회 예치 외 운용에 한계

○ 또한, 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여·수신, 유동성 공급 역할을 담당하여 조합이 은행 등에 단기(3개월) 예치하는 것 보다 중앙회를 이용(3개월 예탁 이율 0.89~1.00%)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 '20년말 현재 여유자금(155.4조원)의 82.1%를 중앙회에 예치
(출처: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2.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현황) '20.6월말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63.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성비율 70% 미만 조합은 1,047개*

* (신협) 179개, (농협) 810개, (수협) 44개, (산림) 14개

○ 다만, 상환준비금의 50%만 유동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타업권과 상이한 현행 유동성비율을 개선(100% 인정 등)하면

- 평균 유동성비율은 80.0%로 상승, 70% 미만 조합은 470개로 감소

□ (영향)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70~100%)시 대출자산 축소(34.5조원)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라 감소하는 당기순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

※ 금감원이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에서 자료를 받아 추정

	<p>(참고) 영향분석 주요가정</p> <p><input type="checkbox"/> 유동자산 부족분 만큼 ①대출자산을 축소하고 ②대출 축소분과 동일한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상환준비금을 100%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간 유동자산이었던 ④요주의이하 유가증권의 유동자산 제외를 가정(시행세칙 개정 예상) <p>→ 대출 축소분 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중앙회 예치금에서는 수익 발생</p> <p><input type="checkbox"/> 조합이 대출자산을 축소하여 중앙회에 예치한다는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유가증권(회사채, 수익증권, CP) 매입 등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영세조합(직원이 10명미만)이 많고 전문운용인력을 갖춘 경우도 드물어 중앙회 예치 외 운용에 한계 ○ 또한, 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여·수신, 유동성 공급 역할을 담당하여 조합이 은행 등에 단기(3개월) 예치하는 것 보다 중앙회를 이용(3개월 예탁 이율 0.89~1.00%)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p>※ '20년말 현재 여유자금(155.4조원)의 82.1%를 중앙회에 예치 (출처: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p>
--	---

②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정성)세분류	대출차주
활동제목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탐색비용 등 발생
비용항목	대출규제에 따른 탐색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상호금융업권 대출차주의 경우, 여신규제 도입으로 인한 대출감소로 인하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 대한 대출탐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평가 수행

(정성)세분류	대출차주
활동제목	상호금융업권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비용 등 추가발생
비용항목	금융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1.상호금융업권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비용 등 추가발생 : 저축은행 평균대출이자율(6.25%: 금감원자료)에서 상호금융업권 평균대출이자율을 차감하여 산출 → 대출차주가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이 제한될 경우,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함

구분	초과여신 대출감소액	유동성비율 도입 대출감소액	저축은행 금융비용 (6.25%)	상호금융 금융비용 (평균이자율)	차이 금액
신협	25,381	28,286	3,354	2,259	1,095
농협	8,379	299,725	19,257	12,971	6,285
수협	3,140	15,933	1,192	803	389
산림	0	743	46	31	15
전체	36,899	344,687	23,849	16,065	7,784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평균대출이자율(A,%)	4.21	3.58	3.62	4.21

(출처: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편익

(정성)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원
활동제목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짐
편익항목	조합의 건전성리스크 감소에 따른 부실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향상될 경우, 조합의 건전성리스크 감소로 부실이 예방되어 조합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어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